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검토 보고서

2023. 3. 30.(목)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희 의원 외 7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장정희 의원 외 7명
- 제안일 : 2023. 3. 22.
- 회부일 : 2023. 3. 24. (의안번호 : 23-22)

2. 제안이유

-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3. 3. 17 ~ '23. 3. 22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차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전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법인·단체시설”을 “기관·법인·단체·시설”로,
 - 안 제12조제5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 안 제14조 제1항에 회의 개최시기 및 횟수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 ~ 4. (생략)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15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 5.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제1항 -----

제14조(회의) ① -----

단,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록) -----

-- 기록·보관-----.

1.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위원의 해촉, 회의개최, 용어수정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이진옥
연 락 처	02-3153-8824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2.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현황

(2023. 3. 1현재)

직위	성명	성별	직업	위촉일	임기 만료일	비고
공동 위원장	박강수	남	구청장			
민간 위원장	이성환	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회장	21.10.26.	23.10.25.	
위원	이인숙	여	복지동행국장	22.01.01.	23.10.25.	
위원	오상철	남	보건소장	21.10.26.	23.10.25.	
위원	하강택	남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센터장	216.11.30.	23.11.29.	실무협의 체 위 원장
위원	최수찬	남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21.11.09.	23.11.08.	
위원	심정원	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1.10.26.	23.10.25.	
위원	송제용	남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21.10.26.	23.10.25.	
위원	손수호	남	인덕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학과	21.10.26.	23.10.25.	
위원	박선숙	여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21.11.09.	23.11.08.	
위원	신수정	여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21.11.30.	23.11.29.	
위원	김명규	남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21.10.26.	23.10.25.	
위원	최상진	남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1.11.09.	23.11.08.	
위원	노정균	남	마포구정신건강복지 센터장	21.10.26.	23.10.25.	
위원	박임성 아	여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21.11.09.	23.11.08.	
위원	홍진주	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	21.10.26.	23.10.25.	
위원	이정미	여	한국여성의집 원장	21.10.26.	23.10.25.	
위원	문용훈	남	태화삼솟는집 관장	21.10.26.	23.10.25.	
위원	강신복	여	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23.01.25.	23.10.25.	
위원	이은영	여	국민건강보험공단마포지사장	22.07.01.	23.10.25.	

※ 총 20명(당연직 : 3명/ 위촉직: 남 9명, 여 8명)